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 관련 업무를
협회에서 수행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52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 관련 업무를 협회에서 수행 (안 제25조 등)	2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52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2.

다. 회 부 일 : 2025. 12.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 관련 업무를 협회에서 수행 등 (안 제25조 등)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 관련 업무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생략)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이 경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32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한 협회는 해당 관리대장 사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제3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1. ~ 9의3. (생략)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생략) ② (생략)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7조(수수료 등) ① ----- ----- ----- -----.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제39조의2제3항에-----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 ----- ----- ----- 다음 각 호의----- -. 1.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5.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6.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7. 제25조에 따른 중고건설기계매매

현행	개정안
<신설>	관리대장의 비치·관리
<신설>	8.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신설>	9.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신설>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 -----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⑥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항----제4항에---

현행	개정안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 제25조제2항¹⁾은 건설기계매매업자²⁾로 하여금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판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³⁾은 자동차매매

1)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업자로 하여금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린 경우 등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 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⁴⁾⁵⁾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⁶⁾에서는 구체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의 제시·매도 등 신고서를 자동차 매매사업조합⁷⁾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에서 사업자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을 두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11. 5. 24.>
2. 삭제 <2011. 5. 24.>
3. 삭제 <2011. 5. 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5) 현행법 제32조에 따른 협회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가 있음.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7)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총 27개가 있고, 19개 조합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9개 조합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음.

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 등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은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 업무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신고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안 제25조)

안 제25조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제시·매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25조 제2항 후단 신설),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관리대장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안 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⁸⁾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단계에서의 입법례⁹⁾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로 규정하고 위탁되는 업무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현행법도 제38조¹⁰⁾에서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합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25조에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제25조에 따른 건설기계 제시·매도 신고 관련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시·매도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부여하더라도 현행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를 개정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건설기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명시 등(안 제39조의2)

안 제39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안 제39조의2제1항),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비용지원 및 하위법령 위임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39조의2제5항·제6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안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들은 현행법 시행규칙¹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처리 업무 중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제25조에 따른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의 비치·관리’ 업무를 추가한 것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면서, 안 제25조에 따라 협회가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법 시행규칙 및 개정안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처리 업무 비교】

현행법 시행규칙 제95조	개정안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1.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3.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4.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5.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6.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신 설>	7. 제25조에 따른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의 비치·관리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8.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9.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현행법 시행규칙 제95조	개정안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음, 안 제39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한바, 이를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으로서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39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¹²⁾의 경우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정보시스템의 개념으로

1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규등록)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전산정보처리 관련 업무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현행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므로, 건설기계 제시·매도 신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시 국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인용조항 이동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7조제9호의4)

안 제37조제9호의4는 안 제39조의2에서 제2항(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하고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인 ‘제39조의2제2항’을 ‘제39조의2제3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9조의2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각종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게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591